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 12. 22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사용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법률의 위임이 없는 벌칙조항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양벌규정을 삭제하고,
- 하수도사용 요율을 66.7%에서 58%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유도함.

3. 수정 내용

- 개정조례안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규칙 제12조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준 자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제 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 범위안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 조례안 제27조 (양벌규정)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 “제29조 (의견제출) 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를 삭제하고
-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

제1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은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동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량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1507)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제10호 내지 1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의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배수중지 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 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이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가 정 용	0 ~ 10 m ³ (1단계)	110	
	11 ~ 20 m ³ (2단계)	130	
	21 ~ 30 m ³ (3단계)	150	
	31 ~ 40 m ³ (4단계)	170	
	41 ~ 50 m ³ (5단계)	220	
	51 m ³ 이상 (6단계)	250	
업 무 용	0 ~ 20 m ³ (1단계)	130	
	21 ~ 50 m ³ (2단계)	160	
	51 ~ 100 m ³ (3단계)	230	
	101 ~ 300 m ³ (4단계)	250	
	301 m ³ 이상 (5단계)	300	
영 업 용	0 ~ 30 m ³ (1단계)	170	
	31 ~ 50 m ³ (2단계)	200	
	51 ~ 100 m ³ (3단계)	280	
	101 ~ 500 m ³ (4단계)	410	
	501 m ³ 이상 (5단계)	500	
욕탕용1종	0 ~ 200 m ³ (1단계)	120	
	201 ~ 300 m ³ (2단계)	160	
	301 ~ 500 m ³ (3단계)	200	
	501 m ³ 이상 (4단계)	240	
욕탕용2종	0 ~ 200 m ³ (1단계)	400	
	201 ~ 300 m ³ (2단계)	510	
	301 ~ 500 m ³ (3단계)	580	
	501 m ³ 이상 (4단계)	640	
산 업 용	m ³ 당	230	

수 정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업종별	단 계 별	당초 요금	개정안요금	수정안요금
가 정 용	0 ~ 10 m ³ (1단계)	75	120	110
	11 ~ 20 m ³ (2단계)	90	150	130
	21 ~ 30 m ³ (3단계)	95	170	150
	31 ~ 40 m ³ (4단계)	110	200	170
	41 ~ 50 m ³ (5단계)	140	230	220
	51 m ³ 이상 (6단계)	160	270	250
업 무 용	0 ~ 20 m ³ (1단계)	92	150	130
	21 ~ 50 m ³ (2단계)	110	170	160
	51 ~ 100 m ³ (3단계)	160	230	230
	101 ~ 300 m ³ (4단계)	170	270	250
	301 m ³ 이상 (5단계)	190	330	300
영 업 용	0 ~ 30 m ³ (1단계)	120	190	170
	31 ~ 50 m ³ (2단계)	140	230	200
	51 ~ 100 m ³ (3단계)	200	310	280
	101 ~ 500 m ³ (4단계)	320	430	410
	501 m ³ 이상 (5단계)	350	530	500
욕탕용1종	0 ~ 200 m ³ (1단계)	90	120	120
	201 ~ 300 m ³ (2단계)	110	150	160
	301 ~ 500 m ³ (3단계)	130	200	200
	501 m ³ 이상 (4단계)	150	250	240
욕탕용2종	0 ~ 200 m ³ (1단계)	270	420	400
	201 ~ 300 m ³ (2단계)	340	550	510
	301 ~ 500 m ³ (3단계)	390	600	580
	501 m ³ 이상 (4단계)	420	660	640
산 업 용	m ³ 당	148	240	230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생략)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 제2항 의----- -----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 건설산업기본법 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③ 배수설비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별표6】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감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 삭제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 ② (생략) < 신설 >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당해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폐수량 측정기----- 폐수량 ----- ⑤ ----- -----이는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 (생략) ② 1 ~ 3 (생략) 4. 시장은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잔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설 > < 신설 > < 신설 >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동항 제1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 고서상의 수량 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15조【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 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한 국산업규격 KS F1507)에 의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할 시설 또는 대 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 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단서 신설 >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 ----- ----- -----,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 (권한위임) (생략) 1 ~ 9 (생략)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지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 16 (생략)	제25조 (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 16 (현행과 같음)	제25조 (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13. ~ 16 (현행과 같음)
제26조 (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개정안과 같음)
< 신설 >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 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 에 장애를 준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 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 나 허위로한 자 5. 법 제24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여 하수를 배제한 자	(삭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설 >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 신설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삭제 >
< 신설 >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의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이내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설 >	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안과 같음)
< 신설 >	제29조(의견제출) 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삭제 >
< 신설 >	제30조(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이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중지 처분) (개정안과 같음)
< 신설 >	제31조 (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점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주정안
< 신설 >	제32조(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